
사고조사위원회 자문회의

2013.03.13

목 차

I.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	1
II.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지침 -----	4
III. 위기대응행동매뉴얼 -----	12
IV. 안전보건공단 주요업무현황 -----	35

I.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 배경

- 화학물질 누출, 화재·폭발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공단 사고대응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발전방안 강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3. 03. 13(수) 17:00~18:00
- 장 소 : 본부 작은마루(6층 소회의실)
- 참 석
 - 공 단 : 이사장, 기획이사, 기술이사, 교육홍보이사 및 본부 각 실장 등 14명
 - 위촉위원 : 19명(학계 : 15명, 유관기관 : 4명)
- 주요행사내용
 - (제1부)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제2부) 공단 업무현황, 위원회 운영 및 활동 내용 소개

□ 진행순서

구분	시 간	발 표 내 용	비고
	14:00~14:10	○ 국민의례 ○ 경과보고	진행:이경성팀장
1부	14:10~14:25	○ 위촉장 수여	이사장
	14:25~14:35	○ 인사 말씀	이사장
	14:35~14:40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4:40~14:50	○ 공단 업무현황 설명	이충호 실장
2부	14:50~15:05	○ 위원회 운영 및 활동 내용 소개	이충호 실장
	15:05~15:15	○ 기념사진	
	15:15~18:00	○ 위원회 발전방안을 위한 자문회의	주관 : 위원장

사고조사위원 위원 현황

순번	성명	소속(회사명)	직위	분야
1	이신재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전기
2	이근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계
3	조경식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센터장	기계
4	이재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기계
5	최기흥	한성대학교	교수	기계
6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기
7	강준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	전기
8	김두현	충북대학교	교수	전기
9	문 일	연세대학교	교수	화공
10	김태옥	명지대학교	교수	화공
11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화공
12	김기영	안전전문기관협의회	전문위원	화공
13	하동명	세명대학교	교수	화공
14	김종효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건설
15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건설
16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	건설
17	박종태	고려대학교	교수	산업의학
18	김양호	울산대학교	교수	산업의학
19	정지연	용인대학교	교수	산업환경보건
20	윤충식	서울대학교	교수	산업환경보건

Ⅱ.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지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3. 2.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등 중대사고의 조사, 검토, 대응 등을 지원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대사고”란 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등을 말한다.
2. “조사”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중대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실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술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

이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중대사고에 대한 조사, 대응, 재발방지대책수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활동 지원
2. 중대사고 조사보고서, 대응활동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
3. 중대사고 예방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4. 중대사고와 관련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중대사고 조사 참여
2. 중대사고 조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시
3. 중대사고 위기대응반 활동 참여
4. 중대사고 사례 수집, 분석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5. 중대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 및 설명
6. 중대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회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위원회 운영 등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 등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안전 관련 관계자,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직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또는 관련 검토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전 및 내용의 요지

4. 검토 안전 내용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7조(수당 및 여비) 공단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관계자,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관련 정보 등을 공단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행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2. 2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제3조제3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 ○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출석위원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나. 간 사

4. 회의사항

가. 검토 및 결정 사항

나. 일반 보고사항

5. 검토 내용

6. 기타 의견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수행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아울러,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또는 위원 본인이나 소속 기관이 자문, 컨설팅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할 시에는 스스로 참석하지 않도록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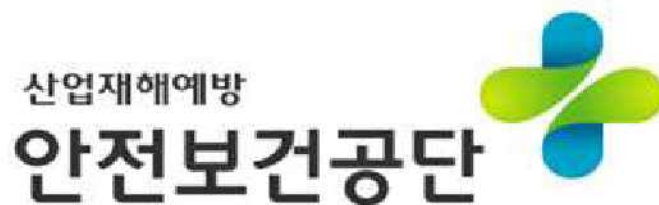
서 약 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Ⅲ. 위기대응행동매뉴얼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공단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상시 비치하여 사고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 · 개정 이력

[illegible]

- 목 차 -

제1절	목적	16
제2절	관련근거	16
제3절	적용범위	16
제4절	용어의 정의	17
제5절	위기형태 및 주관부서	18
제6절	위기 및 대응수준	19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20
7.1	조직 구성 및 임무	20
7.2	비상연락체계	22
제8절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23
8.1	주의(Level I)단계	23
8.1.1	일선기관	23
8.1.2	주관부서	23
8.2	경계(Level II)단계	24
8.2.1	위기대응 전	24
8.2.2	위기대응 시	25
8.2.3	상황종료 후	27
8.3	심각(Level III)단계	27
8.3.1	위기대응 조직 확대 구성	27
8.3.2	대응 활동	28
제9절	운영관리 등	29

제1절 목적

이 매뉴얼은 중대사고로 인한 사업장의 인명, 재산 및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관련근거

-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다. 공단 내규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 재해 등의 기술적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이하“재해조사지침”이라 한다)
 -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당직근무지침

제3절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공단의 활동에 적용한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이하“중대사고”라 한다) 발생으로, 그 영향이 사업장 내·외로 확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국가위기 발생시 “정부표준매뉴얼”상의 위기관리체계에 따른 공단의 활동

제4절 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해”란 중대사고로 야기된 유해·위험성을 총칭한다.

나. “위기”란 중대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중대사고로 발생한 위해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말하며, 화학사고, 일반산업사고, 건설업사고, 서비스업 사고 및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한다.

다. “위기수준”이란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주의(Level I) : 피해 정도가 작고 위해의 확산 우려가 적은 위기로서 주관부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단계
- 경계(Level II) : 피해의 정도가 크고 사업장 내부로 확산의 우려가 있는 위기로서 위기대응조직 구성이 필요한 단계
- 심각(Level III) :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사업장 외부로 확산의 우려가 있는 위기로서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

라. “주관부서”란 위기의 형태에 따라 해당 위기상황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본부 해당 실(팀)을 말한다.

마. “운영부서”란 이 매뉴얼의 제·개정 등 운영을 관장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실을 말한다.

바. “일선기관장”이란 이 매뉴얼에서 정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을 말한다.

제5절 위기형태 및 주관부서

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위기형태, 위기형태별 적용범위 및 주관부서는 표 1과 같다.

<표 1. 위기형태, 적용범위 및 주관부서>

위기 형태	적용 범위		주관 부서(장)
	위기 구분	관장 범위	
화학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누출사고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소관 업무	중대산업사고 예방실(장)
일반산업사고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대사고(화학사고 제외)	산업안전실 소관 업무 관련 업종	산업안전실 (장)
건설업 사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건설재해예방실 소관 업무 관련 업종	건설재해 예방실(장)
서비스업 사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고	서비스재해예방실 소관 업무 관련 업종	서비스재해 예방실(장)
직업성 질병	다수의 근로자가 중독된 직업성 질병 또는 질식 사고	직업건강실 소관 업무	직업건강실 (장)

제6절 위기 및 대응 수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위기수준, 판단기준 및 대응수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위기수준, 판단기준 및 대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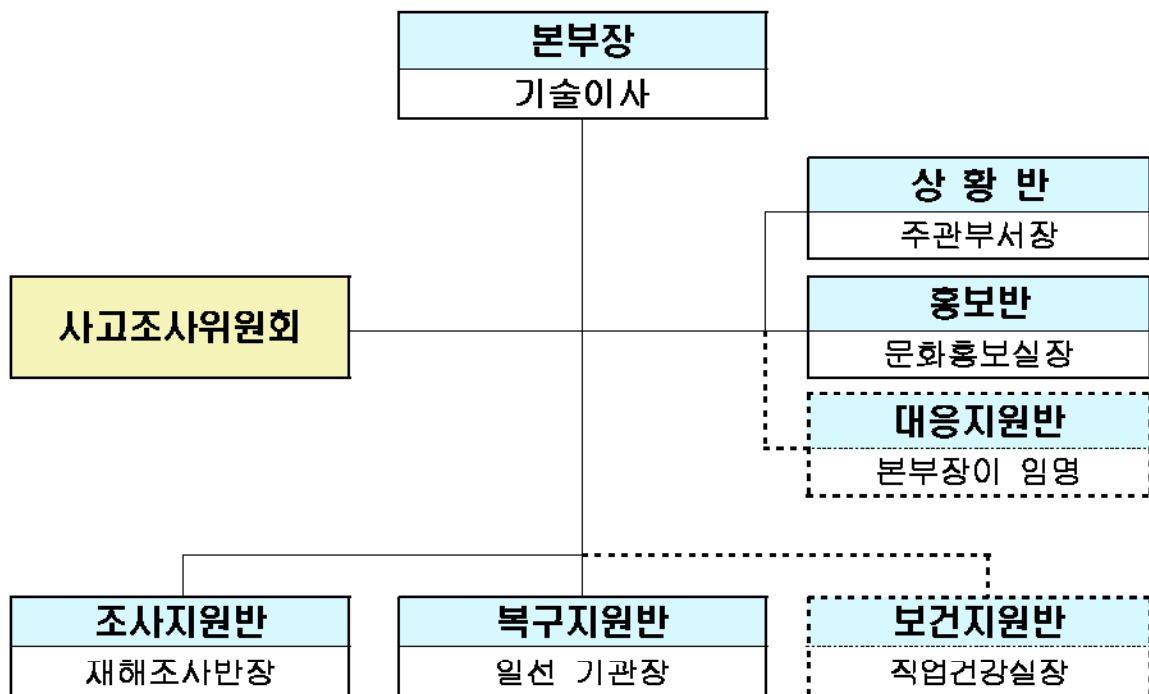
위기 수준	판단 기준	대응 수준
주의 (Level I)	○ 중대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 중대사고로 발생한 위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 차원의 대응
경계 (Level II)	○ 중대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 중대사고로 발생한 위해가 사업장내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대응 조직구성
심각 (Level III)	○ 중대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 중대사고로 발생한 위해가 사업장 외부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대응 조직확대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7.1 조직 구성 및 임무

- 위기대응본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위기대응본부는 경계(Level II) 단계 이상의 위기 발생시 구성한다.
 - 본부장은 기술이사가 되고, 본부장 산하에 상황반, 홍보반, 조사지원반, 복구지원반, 대응지원반, 보건지원반을 둔다. 다만, 대응지원반 및 보건지원반은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구성한다.
 - 위기가 심각(Level III) 단계인 경우 본부장 및 각 반장의 직급과 조직 구성을 상향 또는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응지원반 및 보건지원반을 구성한다.

<그림 1. 위기대응 조직도>



○ 위기대응본부의 각 반별 임무 및 역할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반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구성 방법	주요 임무 및 역할	적용 수준
본부장	기술이사	○ 위기대응본부 업무 총괄	Ⅱ, Ⅲ
상황반	반장:주관 부서장 반원:반장이 구성	○ 위기본부장 업무 보좌 ○ 상황반 업무 총괄 ○ 조사지원반, 복구지원반 및 보건지원반 업무 총괄 조정 지원	Ⅰ, Ⅱ, Ⅲ
대응 지원반	반장:본부장이 임명 반원:반장이 구성	○ 위기 상황, 사업장 정보 파악 ○ 예산, 장비, 인력 지원 계획 수립 시행 ○ 복구 및 조사지원반 활동 지원	Ⅲ
홍보반	반장:문화홍보실장 반원:반장이 구성	○ 위기내용 언론 전파 ○ 언론 보도내용 관련 대응 및 모니터링 ○ 위기조사복구 등에 관한 언론 브리핑	Ⅱ, Ⅲ
조사 지원반	재해조사지침에 따라 구성	○ 위기발생 상황 파악 ○ 위기 원인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조	Ⅰ, Ⅱ, Ⅲ
복구 지원반	반장:일선 기관장 반원:반장이 구성	○ 위기 확대 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 등 지원 ○ 위기 확대 및 2차 재해 예방 조치 ○ 위기현장 복구 지원 ○ 위기현장 측정, 정보수집 등 지원	Ⅱ, Ⅲ
보건 지원반	반장:직업건강실장 반원:반장이 구성	○ 위기장소 작업환경 측정지원 ○ 피해지역 근로자 검진 지원 ○ 근로자, 주민의 건강보건 자료 지원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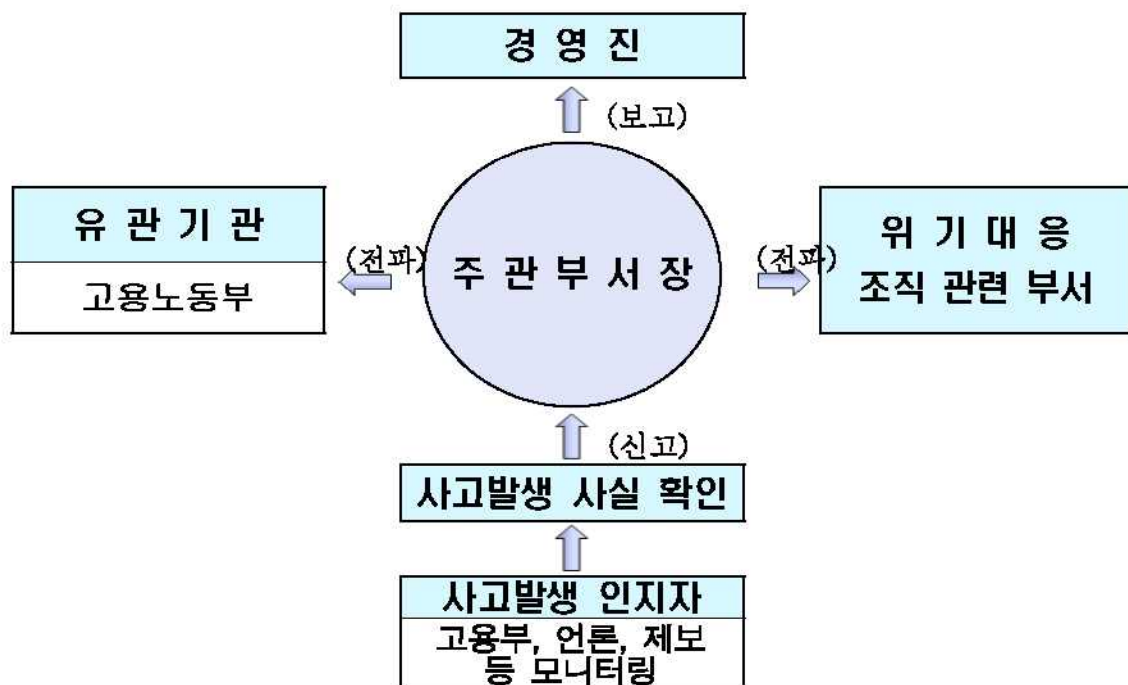
7.2 비상연락체계

○ 위기접수 및 상황 전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누구든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자는 중대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우선으로 지체 없이 주관 부서장(야간은 당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장 또는 당직자는 중대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전파한다.
- 주관 부서장은 사고동향보고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위기수준을 정한 후,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다.

○ 위기접수 및 전파 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비상연락체계도>



제8절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8.1 주의 (Level Ⅰ) 단계

8.1.1 일선기관

- 일선 기관장은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 위기형태 및 규모 등 개략적 내용을 주관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일선 기관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조사지원반을 구성하고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 일선 기관장은 고용노동부 지방청,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유지한다.
- 일선 기관장은 언론 등의 보도 내용 등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홍보담당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 담당 부서장은 즉시 대응 조치한다.
- 일선 기관장은 위기의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상황을 종결 처리한다.

8.1.2 주관부서

- 주관 부서장은 주관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상황반을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관련부서 직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주관 부서장은 일선기관 보고 내용을 참조하여 경영진 및 관련부서에 메모보고 한다.
- 주관 부서장은 일선기관의 동향보고서 등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의 확산여부, 사고조사 진행 상황, 사업장 및 유관기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 주관 부서장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유지한다.
- 주관 부서장은 일선 기관장으로부터 위기상황 종료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고 종결 처리한다.

8.2 경계 (Level II) 단계

8.2.1 위기대응 전

- 주관 부서장은 위기대응 조직 관련 부서에 위기의 상황과 위기대응 수준을 전파하여야 한다.
- 위기대응조직(표3 참조)상의 각 반장은 조직 구성 완료 후 즉시 상황반에 그 결과를 통보 한다.

※ 위기대응 조직구성 및 업무 분장 내용을 포함

- 상황반장은 조직구성 결과를 대응본부장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한다.
- 본부장은 위기의 크기, 규모 등 심각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안전보건전문가를 사고조사 및 대응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각 반장은 위기대응 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장비, 사업장 정보, 법 및 규정 등을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
- 상황반장은 상황반 구성·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8.2.2 위기대응 시

〈상황반〉

- 상황반장은 조사지원반, 복구지원반 및 보건지원반 등의 업무를 조정·지원한다.

※ 경계(Level II)단계에서는 대응지원반의 임무를 상황반이 담당한다.

- 상황반장은 위기대응본부 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 상황반장은 전체적인 위기대응본부 활동사항을 취합하고 일일대응상황을 본부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붙임 서식 2)하여야 한다.

〈홍보대응반〉

- 홍보반장은 언론 보도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상황반에 통보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홍보반장은 필요시 사고조사, 복구활동 등 대응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추진하며, 안전보건전문가를 전문분야에 대한 브리핑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홍보반장은 위기와 관련된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집단을 상대로 사고조사 및 복구상황을 설명한다.

〈조사지원반〉

- 조사지원반장은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사지원반을 구성하고 상황반으로 통보한다.
- 조사지원반은 위기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위기발생 상황 파

악 및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지원반장은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 검토 등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조사지원반은 사고조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 사업장 정보 및 사고관련 정보
 - 개인 보호장구
 - 측정 및 계측 장비 등
- 조사지원반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 현장 관찰,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면담, 증거 수집(CCTV 등), 기록물 확인 등을 통한 원인조사
- 조사지원반장은 관련 규정(재해 등의 기술적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복구지원반〉

- 복구지원반장은 안전보건기술, 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등의 지원이 가능한 직원이 포함된 복구지원반을 구성하고 상황반에 통보한다.
- 복구지원반은 위기발생 사실 인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응지원반(Level II 단계에서는 상황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기내용 및 피해규모 파악
 - 2차위기 발생 우려 등 위기 현장의 상황 파악 및 보고 등
- 복구지원반은 위기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다음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 작업중지, 주민대피, 작업자 보호대책 등
- 복구지원반은 다음의 복구 지원활동을 한다.
 - 위기지역 복구 및 작업환경측정 지원
 - 위기지역 환경오염 및 근로자 건강장해 평가지원
 - 위기지역 내 오염물 수거 및 폐기 지원
 - 위기지역 근로자 및 주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상담 등

8.2.3 상황종료 시

- 상황반장은 위기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위기상황 종료 시점을 결정하여 전파한다.
- 위기대응반의 각 반장은 투입된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복구지원반장은 위기발생 후 복구활동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황반장에게 제출하고, 상황반장은 이를 취합하여 본부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8.3 심각 (Level Ⅲ) 단계

8.3.1 위기대응 조직 확대 구성

- 위기수준이 심각단계인 경우 필요시 본부장을 이사장으로 격상하여 구성할 수 있다.
- 본부장 산하에 대응지원반과 보건지원반을 별도로 둔다.

8.3.2 대응 활동

〈대응지원반〉

- 대응지원반장은 본부 각 실별 주요 업무(예산, 인사, 기술지원, 건강, 교육, 미디어 등)를 담당하는 직원이 포함된 대응지원반을 구성한다.
- 대응지원반은 위기 진행상황 및 조사지원반과 복구지원반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위기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복구 활동을 조정·지원할 수 있다.
- 대응지원반장은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장비 및 보호구 지원 방안
 -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 안전보건정보 자료 및 교육 지원 방안 등

〈보건지원반〉

- 보건지원반장은 의사, 약사, 간호사, 측정기사 등이 포함된 보건지원반을 구성하고 상황반에 통보한다.
- 보건지원반장은 위기지역(산안법 적용범위에 한함)내에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 작업환경 측정
 - 근로자 건강 상담 및 검진
 - 근로자, 주민의 보건·건강에 관한 자료 등 정보 제공

- 조사지원반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위기지 역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기타사항〉

- 위기대응본부의 각 반은 대응지원반 및 보건지원반 임무를 제외한 경계 (Level II) 단계의 임무와 역할을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정부의 위기대응 표준 및 실무 매뉴얼 작동 시, 본부장은 상황을 파악하여 이 매뉴얼 상의 절차와 연계한다.

제9절 운영관리 등

- 가. 위기대응 본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기대응 활동을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나. 본부 각 실장 및 일선기관장은 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위기대응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다. 위기대응 조직에 포함된 각 반은 위기대응 활동내역을 “위기대응활동일지(붙임 서식 3)”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라. 이 매뉴얼은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본부 당직실, 일선기관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마. 운영부서는 공단 직제개편, 정부의 표준매뉴얼 개정 등으로 인해 이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 바. 직원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연락체계 변경 시 본부의 해당 업무 담당부서는 즉시 그 사실을 지정된 장소에 변경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1]

○○○ 사고 동향보고

☐ 사고개요

○ 사고내용은 6하원칙 하에 사고발생경위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작성

※ 사고원인 : 사고발생의 직접원인(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과 간접원인(기술관리, 교육관리, 작업관리)을 구분하여 작성

☐ 발생과정

○ 현장방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발생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고원인(추정)

○ 사고원인을 간략하게 기재

☐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 현장 방문하여 조치한 결과 및 사고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 기재

☐ 기타사항

○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경우 매체명과 내용을 간략히 기재 할 것

[첨부] 관련사진 및 도면 등 첨부

[illegible]

0000년 0월 00일 00시 00분경 00 00시 00면(00국가산업단지)에 소
제한 000(주) 공장내의 수처리 공정에서 염산탱크(FRP 재질) 내부 보
수작업시 FRP 라이닝을 위한 수지도포 및 접착작업 중 폭발하여 화재
발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화상을 입은 재해임.

피해자가 염산탱크 내부에서 FRP라이닝을 위한 수지 도포 및 접착 작업 (작업 진행면적 : 약 2m²)을 실시하던 중 발생한 재해임.

FRP 재질의 탱크를 보수하기 위해 시너 성분이 있는 유성페인트를 먼저 칠하고 경화제인 공업용 본드를 이용해 FRP 접착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가 발생하여 탱크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풍기 등을 통한 강제배기를 실시하지 않고 핸드그라인더 등의 전기기계기구 사용으로 인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노동부와 합동으로 사고조사(00.00.00 예정)를 실시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사고당시의 상황을 참조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한 후 재해사례를 배포하여 동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임

- 32 -

[붙임 서식 2]

○○○ 사고 일일상황보고(. .)

☐ 상황총괄

☐ 사고 피해, 위해 확산 등 변화 동향

☐ 대응반 별 주요활동 내용

대응반명	주요활동	참여인원

☐ 언론동향 등 특이사항

☐ 향후 전망 및 활동 계획

[붙임 서식 3]

위 기 대 응 활 동 일 지

○○○반(팀)

근 무 일 시			
근 무 자	성 명	소 속	임 무
주 요 활 동 내 용			
향 후 활 동 계 획			

보고자 : ○○○ (서명)

IV. 안전보건공단 주요 업무현황

2013년 주 요 업 무 현 황

2013.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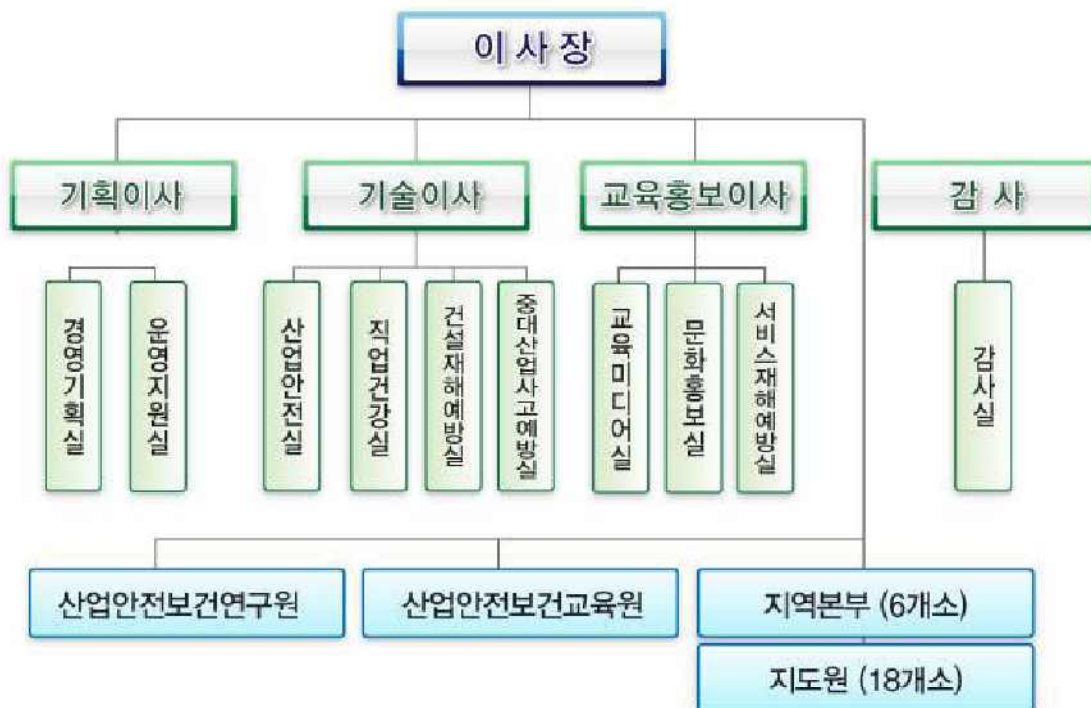
순서

I. 일반현황	38
II. 산업재해 발생현황	41
III. 산업재해 예방활동 체계	43
IV.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4
1.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45
2.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47
3. 직업건강활동 강화	49
4.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51
5. 산업안전보건 연구조사	53
6. 글로벌 협력 활성화	54

I.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조직도 : 본부(10실), 연구원, 교육원, 지역본부(6개소) 및 지도원(18개소)



○ 직원현황

(♂/♀, ♂/♀ : -)

구분	계	임원	발령직	1급	2급	3급	4급~5급		6급 등
계	1,370/1,304	5/5	5/4	57/57	158/148	313/310	386/505	296/127	150/148
본부	189/211	5/5	-/-	10/16	25/25	66/73	62/74	10/6	11/12
산하기관	1,181/1,093	-/-	5/4	47/41	133/123	247/237	324/431	286/121	139/136

※ 기술사 364명, 기사 695명, 박사 61명, 석사 414명, 전문의 5명

2 근거법률 현황

법 률 명	주 요 내 용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1987.5.30 제정)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근거 규정 ○ 정관, 사업, 임원 구성, 이사회 및 예·결산, 산하 기관 등의 사항을 명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개정(2008.12.31)
2. 산업안전보건법 (1981.12.31 제정)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책임 소재를 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직업병 역학 조사 및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관련 업무 등 법에 따른 정부 위탁업무 수행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7.1.19 제정)	○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 사항,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정관, 이사회, 경영공시, 예산회계,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3 관장업무

본 부 □ 10 실)	경영기획실	• 대국회, 공단 비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 내외부 경영평가 및 조직·정원 관리 등
	운영지원실	• 인사, 복무, 보수 및 노무관리 • 계약 및 회계관리, 자산관리 및 지방이전 추진 등
	산업안전실	• 제조업 재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및 보조금 지원 등
	직업건강실	• 직업건강 분야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건강관리수첩, 뇌심·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등
	건설재해예방실	• 건설업 재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총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 등
	교육미디어실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총괄 •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문화홍보실	• 산재예방 홍보, 안전문화운동 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운영
	서비스재해예방실	•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 서비스업 기초·집중 기술지원, 재해예방 네트워크 구축
	감사실	• 공단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총괄 • 직원 공직기강 확립,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산업안전보건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수행 • 직업환경, 직업병, 화학물질 독성 연구 및 산재통계 분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산업안전 전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직무교육, 건설안전체험 및 가상체험교육 운영
지역본부 및 지도원 (24개소)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재해예방기술 및 자금지원 • 직업건강분야 기술지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교육지원

Ⅱ. 산업재해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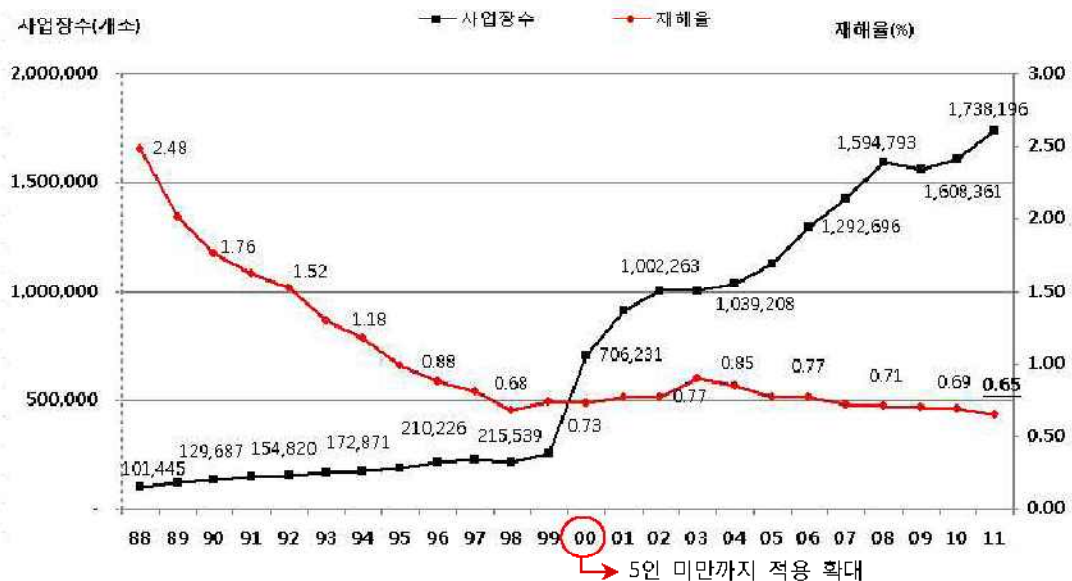
<산업재해를 추이>

- '95년 1%미만 진입, '98년 0.68%의 최저점 기록 후 '99년부터 '09년까지 0.7%대의 산업재해 발생, '10년 0.6%대(0.69%) 재진입

❖ '12년도 공단설립 이후 최저 재해율 0.59% 기록 ❖

- 적극적 사망재해 예방을 통한 사고사망만인율 지속 감소 노력 -

<전체 사업대상 사업장 수와 산업재해율 변화>



<12년도 12월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12.12월	전년 동기	증감	%
○ 사업장수	1,825,296	1,738,196	87,100	5.0
○ 근로자수	15,548,423	14,362,372	1,186,051	8.3
○ 재해자수	92,256	93,292	-1,036	-1.1
- 업무상사고	84,784	86,045	-1,261	-1.5
- 업무상질병	7,472	7,247	225	3.1
○ 재해율	0.59	0.65	-0.06	-9.2
○ 사망자수	1,865	1,860	5	0.3
- 사고 사망자수*	1,135	1,129	6	0.5
- 질병 사망자수	730	731	-1	-0.1
○ 사망만인율	1.20	1.30	-0.10	-7.7
- 사고 사망만인율	0.73	0.79	-0.06	-7.6

* 사고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 사망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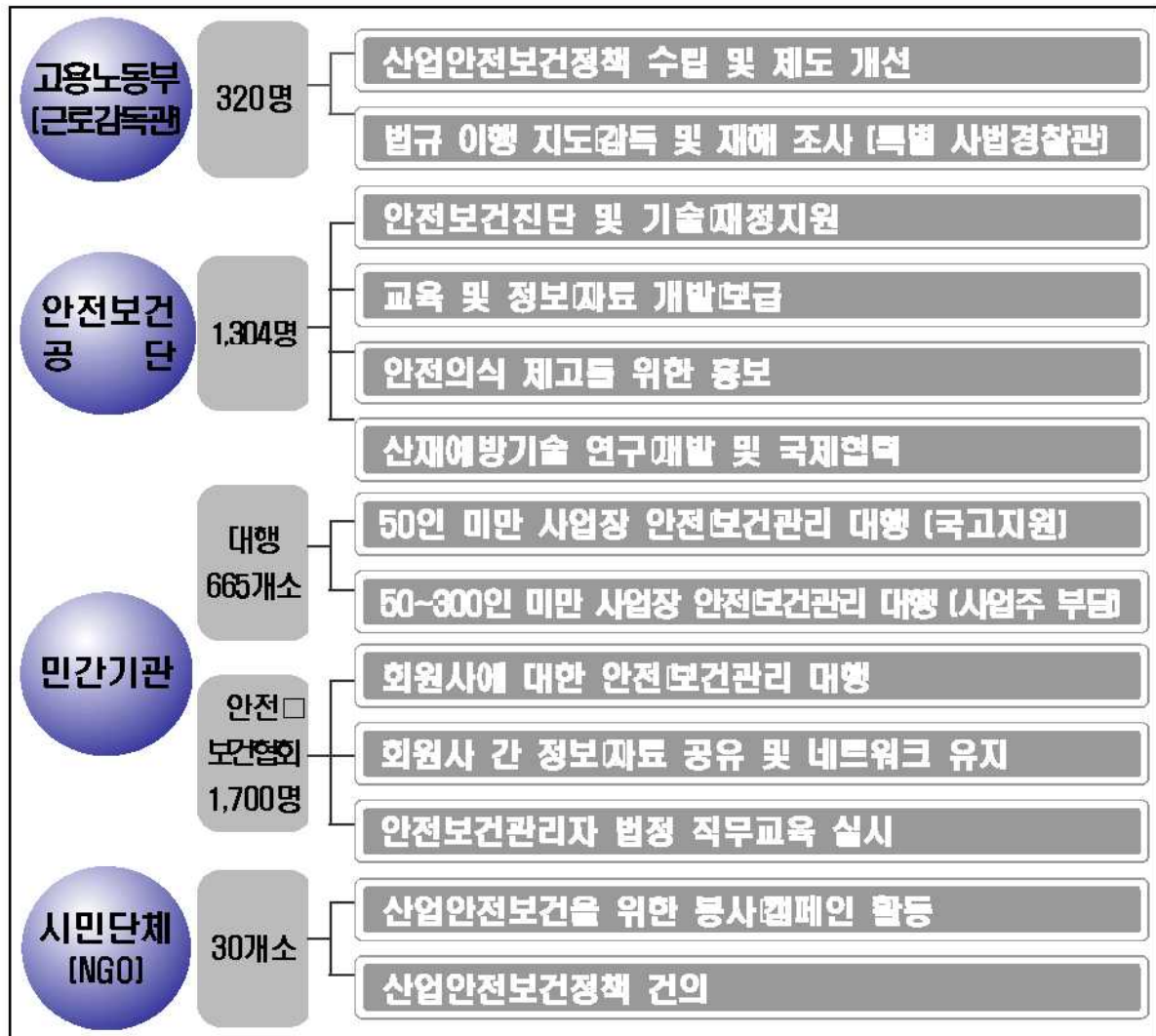
-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6%p 감소, 사망만인율은 0.10P 감소
 - 재해자는 1,036명(1.1%) 감소, 사망자는 5명(0.3%) 증가
 - ※ 특히, 업무상 사고자는 1,261명(1.5%) 감소,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6명(0.5%) 증가
 - 업무상 질병자는 225명(3.1%) 증가
- 업종별로는 전체 산업재해 중 제조업 34.3%(31,666명), 서비스업 31.6%(29,159명), 건설업 25.3%(23,349명), 기타산업 8.8%(8,082명) 점유
 - 건설업 2.5%(567명), 농업 4.9%(28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1.6%(10명)은 증가
 - 제조업 1.9%(△628명), 서비스업 1.9%(△577명), 광업 17.4%(△192명)은 감소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1.5%인 75,151명 발생

<재해발생 특징>

- 전년동기 재해율 9.2%, 사망만인율 7.7% 감소로 재해자 감소폭 확대
 - 제조업 재해자는 화학제품제조업(△234명), 도금업(△115명)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발생형태별로는 감김·끼임(△525명), 전도(△217명) 등을 중심으로 감소
 - 건설업 재해자는 건축건설공사(461명), 기타건설공사(138명) 등에서 증가 하였으며, 발생형태별로는 추락(243명), 절단·베임·찢림(233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서비스업 재해자는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312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198명)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전도(343명), 감김·끼임(298명) 등을 중심으로 감소

Ⅲ. 산업재해 예방활동 체계

【 주 체 별 추 진 체 계 】



【 규 모 별 추 진 체 계 】

- ◆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 현장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 ◆ 50~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억원~120억원 미만 건설업 현장
 - ☞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거나, 민간 재해예방기관에서 대행
- ◆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억원 미만 건설업 현장
 - ☞ 재해다발 사업장 및 현장을 중심으로 공단에서 기술지도 및 교육지원
특히, 영세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추가

IV.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 략 목 표

- 사고 사망만인율 5% 감소
- 사고 재해율 5% 감소
- 업무상 질병 만인율 5% 감소



추진전략

- 목표성과 중심 : 핵심 타겟(Target) 선정을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
- 협력관계 중심 :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심 역할」 수행
- 창의현장 중심 : 「자율과 창의」를 통한 지역특성별 재해예방 성과 제고
- 사람참여 중심 : 고객 중심의 사고와 성과지향의 조직문화 구축



중점추진방향

- 사고·사망재해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강화
- 적시(喉嚨)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통합 기술지도
-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산재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안전문화사업 강화

1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 ◇ 사고성 재해 감소를 위한 50인미만 제조업, 20억미만 건설 현장, 서비스업 7대업종 등 재해다발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지원
 - 특히, 재해강도가 높은 사고성 사망재해 집중 관리 -

□ 업종별 사고·사망재해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493,000개소)
 -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 · 3억 미만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 기술·교육·재정 등을 지원(203,000개소)
 - ※ 제조업 48,000개소(공단 2,000/위탁 46,000), 건설업 155,000개소(공단 5,000/위탁 150,000)
 - 재해다발 서비스업 7대업종 기초안전지원 및 집중지원(290,000개소)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강화(2,050개소)
 - 사고·사망재해가 증가하는 조선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광업·농업·어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1,050개소)
 - ※ 조선업 500개소, 운수·창고통신업 350개소, 임업·광업·농업·어업 200개소
 - 외국인 근로자 재해 감소를 위한 상담 및 방문 기술지도(1,000개소)

□ 적시(適時)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통합지원

- 사망재해 등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 기술지도(15,000개소)
 - 재해발생 사업장의 재해원인 분석 및 직·간접 예방대책 지원
 - ※ 제조업 9,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스업 3,000개소, 업무상질병 2,000개소
- 신규 설립사업장(제조서비스) 적시 기술지도(직접 5,500개소/간접 132,800개소)
 - 재해발생 위험업종 대상 종합지원(제조업 4,500개소, 서비스업 1,000개소)
 - 기타 사업장은 정보자료 우편송부 등 간접지원(제조업 32,800개소, 서비스업 100,000개소)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안전보건지킴이 패트를 점검(30,000개소)
 - 추락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지도 및 개선
 - 취약지역에 대해 고용부·공단 합동 기동반 구성·지도
-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200대 건설업체 본사 방문 컨설팅(60개사)
 - 재해발생 기술적 원인 및 대책 제시, 안전관리 향상 컨설팅 지원
- 발주기관 「건설재해현황(MAP)」 개발·보급(광역 17개소, 기초 227개소)
 - 지자체별 자율안전관리 활동 유도를 위한 재해율, 사고 사망만인을 등 주요 건설재해 관련 자료 매월 업데이트 제공(공단 홈페이지 게시)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73,000건)
 - 산업기계 설계·제작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 산안법을 개정*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
 - * 개정법령 공포('12.1.26), 시행('13.3.1), ** 인증대상 : 11종→43종
- 사용단계에서의 안전검사(79,000대)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12종¹⁾에 대해 정기적(6개월~2년)으로 안전검사 기준 적합여부 검사
 -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재해예방 기술지원 병행 실시

□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

- 재정 사정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조·융자금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794억원)
 -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부담비율 완화('11년 50%→'12년 30%), 소요비용의 70%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 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지원(802억원)
 - ※ 사업장당 3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율 3%

1) 안전검사대상 12종: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 전동기, 리프트, 콘크리트, 국소배기장치, 원삼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물리기, 사출성형기

2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경영체제 정착 및 사전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심사, KOSHA-18001 인증 및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확대 시행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법 개정에 따른 사업 확대('12년 20,000개소 → '13년 40,000개소)
 - 노·사 자율에 의한 유해·위험 관리능력 배양 및 지원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격 실시(2010~2012년, 3년간 시범사업 실시)
 - ※ 제조 20,000개소 · 건설 4,000개소 · 서비스 8,000개소 · 직업건강 8,000개소
 -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시('14년 이후) 사업장의 참여 확대로 제도의 정착 가속화 전망
 -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 평가)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최대 22.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지원

- 기업의 안전보건 조직, 프로그램 등 시스템 확보여부 인증 지원 확대('12년 1,141개사 → '13년 1,289개사)
 - 안전보건경영 실태분석에 따른 기술지도 후, 안전보건경영체제 ·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 ※ 제조업·기타업종 1,200개소 및 건설업 89개소
 - 인증 후 매 1년마다 사후관리 및 3년 후 연장여부 재심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제조업은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 또는 설비²⁾에 대해 공장의 신설·이전 및 설비 변경 시

-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심사(1,250건)
- 공장 가동 전 심사내용의 준수여부 확인(1,250건)

※ '12년부터 제출대상 업종(2개 → 10개) 및 규모(5인 이상 → 전 규모) 확대

- 건설업은 백화점·터미널 등 다중이용 건축물, 교량·터널·굴착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 착공 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심사(2,400건)
- 공사단계별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5,900회)

□ 공정안전보고서(PSM)³⁾ 심사 및 확인

- 화재·폭발·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의 신설·이전 및 구조변경 시

- 보고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고, 가동 전 이행여부 확인(690건)
- 공정별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종합적 관리 시스템 평가

2) 제출대상 업종·설비: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가구제조업(이상 10개 업종)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환기장치(이상 5개 설비)

3)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3 직업건강활동 강화

- ◇ 노·사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활성화, 취약계층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저감을 위한 새로운 유해인자 특별관리

□ 근로자 건강증진

- 노·사 주도의 건강증진활동⁴⁾ 지원
 - 참여 사업장·단체에 대한 활동비용 지급(7.7억원)
 - 근로자 정밀체력측정, 자료보급, 교육, 컨설팅 등 참여사업장 확산(8,000개소) 및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50개소)
- 근골격계질환 취약 업종(직종)⁵⁾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3,000개소)
 - 실태조사, 예방매뉴얼 작성(3종), 프로그램 컨설팅 등
 - 근로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및 일반 PC용 스트레칭 프로그램⁶⁾ 지속 보급(2종, '12년 실적 50,368건 다운로드)

□ 산업보건 기초 서비스 제공

-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민간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활용한 보건관리 종합지원(25,000개소)
 - 작업환경 개선, 고혈압·당뇨 등 기초질환관리, 보건교육 등
-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12년 5개소 → '13년 10개소)
 - 직업병 유해요인 관리 및 직업건강상담·교육 지원(75,000건)

4) 건강증진활동: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 생활습관 개선활동

5) 취약직종: 지역별 근골격계질환 발생통계를 분석하여 다발 업종(직종) 선정 및 기술지원

6) 프로그램: 「따라해보세요! 샘솟는 건강 Energy」,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송」

- 작업환경이 열악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79.5억원)
- 측정·검진 실시율과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병 조기발견 및 건강보호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 새로운 유해인자 특별관리 중점지원(500개소)
- 고위험 유해인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직업병 사전예방(Top 4 직업병 예방 프로젝트)

그룹 1 : 특별관리물질(6종) 및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취급사업장
 그룹 2 : 사망에 이르는 급성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및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그룹 3 : 방사선 노출 취약직종(비파괴검사원, 의료기 판매원, 진단 방사선사) 보유 사업장
 그룹 4 : 사각지대 및 미확인 유해인자 취급사업장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업보건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1,500개소)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지원 및 직업병발생 사업장 기술지원(수시)
- 비파괴검사업체 및 의료기 제조·수입업체 등 방사선 노출 취약업종 직업병예방 기술지원(수시)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150개소) 및 컨설팅(1,550개소), 조선·건설업 석면취급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활성화(수시)
- ※ 공단 본부 내 석면안전홍보관 운영('12년 실적 : 5,684명 내방)
-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160개소)
- 인력, 시설, 장비, 측정결과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 후 등급 부여공표

4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 ◇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계층별 맞춤 교육,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개발·보급 및 안전보건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안전보건교육

- 중·소규모사업장 계층별 맞춤 교육(212,050명)
 - 경영층 연찬회·위험성평가 사업주(담당자)교육 및 관리감독자 등 중간관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근로자를 위한 이동안전교육·사내교육 지원 및 체험교육
 - ※ 체험교육장 현황: 교육원, 인천, 충청, 경북, 경남, 호남 등 6개소 운영
-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2,200명)
 - 외국인·고령·여성·예비산업인력 등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통한 실험·실습 위주의 74개 전문교육 과정 운영(40,605명)

□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개발·보급

-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미디어 개발·보급
 - 스마트폰용 안전보건 어플리케이션(2종) 및 QR코드 콘텐츠⁷⁾(100종) 등
- 업종별·직종별 미디어 개발·보급(536종)
 - 소책자, 팸플릿, 포스터, 교안(PPT), 애니메이션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

7) QR코드 콘텐츠: 위험기계·설비에 다양한 정보가 있는 QR코드 인쇄 스티커 부착

□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홍보채널 구축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 정보, 이벤트 등의 콘텐츠를 제공(1일 평균 1~2개)하여 고객과의 소통 강화
- ※ '12.12월말 현재 1,412,901명의 방문자 및 팬 수 확보
- 「조심조심 코리아」 안전문화 슬로건 확산
 - TV·라디오 캠페인, 신문 광고, 생활매체(지하철 등) 홍보(수시)
 - 「위기탈출넘버원」, 「산재예방달인편」 등 기획방송(12회)
- 매년 7월 첫째 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설정·운영
 - 전시회, 세미나, 우수사례발표, UCC Show 등 개최

□ 안전보건 네트워크 강화

- 사회 각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지자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 MOU(324개 기관), 안전보건 협력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교육, 캠페인 등의 예방활동 전개
- 안전보건지킴이 협의체 운영(23개 협의체)
 -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토록 양성한 「안전보건지킴이」 간 업종별·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원활한 정보교류 유도
- ※ '12년도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실적 : 12,202명
- 고용부(지방관서) 및 공단(지도원)간 업무연계 강화
 -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일선기관의 융합행정 도모
- ※ 협의체(산재감소협의회 등) 구성을 통한 분기별 정례업무협의 실시
- ※ 지역별 산재감소 추진방안, 감독·재해조사 지원 등 중요업무는 필수협의(정보공유)

5 산업안전보건 연구조사

- ◇ 안전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연구 분야 역량집중, 역학조사의 내실화 및 재해원인 분석을 위한 다차원적 통계 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실용연구

- 총 82개 과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 수행
 -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선행연구(44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연구(22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16건)에 역량 집중
-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제도 반영, 학회발표 활동 등 강화
 - ※ '12년 연구결과 활용실적 : 정책·제도 반영(15건), 논문게재(68건), 학회발표(151건)

□ 역학조사 및 정도관리 내실화

- 역학조사 실시(수시)
 - 석면, 벤젠과 관련된 직업성 암 및 감염성 질환 취약업종·공정 등
 - ※ '12.7월부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를 세분화 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운영분과·작업환경평가분과·업무관련성평가분과 위원회)
- 측정·분석·진단기관 정도관리(7회)
 -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분석기관,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중 참여기관에 대해 실시하여 신뢰성 확보

□ 산업재해통계 생산·제공

- 정부 공식 산업재해현황 통계 및 근로자 건강진단·작업환경 측정 결과 통계 생산·제공(6회)
- 재해원인 통계분석(수시)
 - 업종·규모·재해형태별 다차원적 원인분석을 통해 산재예방 정책 및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제공

6 글로벌 협력 활성화

- ◇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 주도 및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⁸⁾의 성공적 개최 준비

□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주도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⁹⁾ 의장기관 역할 수행
 -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¹⁰⁾ 취지 확산 [전세계 2,751개 기관 지지서명]
-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 사무국 구성·운영, 국내외 행사 홍보, 웹사이트 구축 등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지원(31회)
 - 초청연수·워크숍, 현지기술자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수행
- 중국, 몽골, 베트남 등 8개국 10개 기관 기술공여
 - ※ ODA 재원을 활용한 1천만불 규모의 베트남 지원사업('13년~'14년)

□ 선진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국제노동기구(ILO)·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선진 정보·기술 교류(19회)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OH)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수(5회)
 - ※ '12.12월말 현재 24개국 48개 기관과 협정체결

8) ICOH 2015: '15년 5월 중 개최(6일간), 주관: 국제산업보건위원회·공단, 120개국 3,000명 참여 예정

9) ISSA 예방문화위원회: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50개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을 회원으로 구성

10)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서울에서 개최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08.6.29~7.2) 시 채택,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한 안전보건분야 최초의 국제적 선언